

산업 정보 ::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조사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해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의 주류산업현황

(면적 : 2.791.810km<sup>2</sup>, 인구 : 3.874만명)

SOUTH  
PACIFIC  
OCEAN



## 1. 주류산업 현황

###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아르헨티나 주류별 소비량은 판매액 기준으로 포도주, 맥주, 식전주(16%), 위스키(8~12%), 리큐르(7%), 보드카·진(2%)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01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8.55ℓ로 이를 실제 주류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93.97ℓ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내국세 중 주류의 납세 부담액은 1억 7,269만 페소(U\$5,756만)로 내국세 중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종별로는 맥주, 알코올 음료, 샴페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류의 경우 세금 중 관세, 부가세(21%) 등이 납부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부가세 중 주류 부문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아르헨티나 수입주류시장은 2004년 U\$14,795천 규모로 주종별 수입 규모는 위스키, 포도주, 럼, 리큐르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말 외환위기 이후 수입이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4년 기준으로 2억 6,809만불의 주류를 수출하였는데 주종별로는 포도주, 맥주, 과일·증

류주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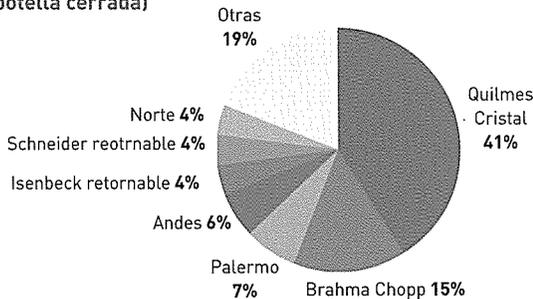
### 1) 맥주

아르헨티나의 농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맥주 생산량은 1983년 3억 1,200만ℓ에서 2003년 12억1,000만ℓ로 최근 20년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맥주 판매는 2003년 12억 924만ℓ로 이중 수입 맥주가 889만ℓ로 0.07%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국내산 맥주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6ℓ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맥주 주요 소비국의 1인당 소비량(체코 160ℓ, 독일 127ℓ)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최근 맥주가 포도주를 대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맥주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에는 4개의 맥주 생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Cerveceriy Malterias Quilmes사가 'Quilmes', 'Palermo', 'Brahma' 등의 브랜드로 81~8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수입맥주는 주로 멕시코, 아일랜드, 영국, 독일, 네덜란드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맥주의 주요 수입업체로는 Compania Ind. Cervecera S.A와 Komoto사가 있으며 Compania Ind. Cervecera S.A

는 멕시코산 'Corona'와 아일랜드 산 'Draught Guinness'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으며 Komoto사는 일본산 'Asahi'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다.

Participacion en el mercado nacional de cerveza (botella cerrada)



아르헨티나 농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맥주는 2004년도에 9,299U\$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칠레, 앙골라, 우루과이, 페루, 파라과이 등으로 나타났다.

## 2) 포도주

아르헨티나는 2004년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포도주 생산국가로 1961년 에는 16억 7,500만ℓ의 포도주를 생산하였으나 2004년에는 15억 4,643만ℓ 생산하여 생산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도주 판매량도 지속되는 내수위축으로 인해 1979년 20억 6,645만ℓ에서 2004년 13억 9,126만ℓ로 계속 감소하였다. 수입 포도주는 2004년도에 168,000ℓ를 소비하여 전체 판매량의 0.01%에 불과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소비자가 자국산 포도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주요 포도주 생산지는 멘도사, 산후안, 라리오하, 파타고니아 등 4대 지역이며 아르헨티나 포도 산업청(INV

; Instituto Nacional de Vitivinicultura)에 등록된 포도주 제조자는 1,300개사로 이중 72%가 멘도사 주에 19.26%가 산후안 주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멘도사 주가 2004년 11억 4,160만ℓ(1979년 17억 7,700만ℓ)로 전체생산량의 65%를 생산하였고, 산후안 주는 3억 1,033만ℓ(1979년 6억8,584만ℓ)로 5.98%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 1인당 포도주 소비량세계 8위는 29.87ℓ로 전년도 31.6ℓ 대비 6%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Malbec'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주가 시판되고 있는데 '04년도 적포도주·로즈와인 7억 2,388만ℓ, 백포도주 3억 8,498만ℓ가 판매되었다. 포도주 가격대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4.2페소(약 U\$1.40) 이하의 포도주 판매가 83.7%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중 샴페인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으로 '04년 수입규모는 U\$677천이며 수입업체는 Chandon, Sant Sadurni, Esmeralda 등 3개사가 있다. Chandon사는 프랑스산 'Moet Chandon' 브랜드를 수입하고 Sant Sadurni사는 스페인산 'Freixenet Cordon Negro' 브랜드를 수입하며 Esmeralda사는 오스트리아산 'Schlumberger'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기타 발포성 포도주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우루과이 등으로 '04년에 U\$15천을 수입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포도주는 2004년도에 202,261천U\$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과 영국이며 그 외의 국가로는 브라질, 캐나다, 파라과이, 덴마크등이 있다.

### 3) 위스키 등 기타 주류

아르헨티나 주류상협회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맥주, 포도주를 제외한 위스키 등의 주류생산은 2004년 기준 4,447만ℓ 로 현지 식습관상 식전주(apertivos)의 생산, 소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주류 주종별 생산 및 수입현황

품목명	2003		2004		2005상
	생산	수입	생산	수입	생산
계	48,998	2,169	44,472	2,169	34,818
위스키	6,620	1,104	6,149	1,104	5,398
베르무트 등 식전주	18,511	8	15,837	8	11,166
아마르고, 비터 등	11,151	139	10,115	139	8,007
꼬냑·브랜드	206	7	143	7	-
럼	79	438	39	438	131
진	1,959	36	1,524	36	1,113
보드카	1,324	107	1,069	107	964
리큐르	7,224	274	7,6076	274	6,448
백스꼬, 페킬라	-	56	-	56	-
기 타	1,923	-	1,917	-	1,59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주류상협회 등 종합

알코올 50% 이상, 용기 50ℓ 이상 위스키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영국, 브라질 등으로 04년 중 수입규모는 U\$3,892천이며 주요 업체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P.R.사는 브라질산 'Pernod Ricard 52189 Barley Malt' 와 영국산 'Scotch Whisky 7200237' 을 수입하고 있다. d.Llorente사에서 수입하는 브랜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량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Allied Domecq사는 'Malta de Whisky Tanktain' 을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ℓ 이하의 위스키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에서 U\$5,248천을 수입 하였다. 주요 업체별 수입현황을 보면 Cinba사는 영국산 White

Horse, Old Parr Caol Ila, JB, Clynelish, Glen Ord, Glen Elgin 등의 브랜드와 아일랜드산 VAT, JB 등을 수입하고 있다. P.R.사는 Royal Salute, Pipers, Jameson 등의 브랜드를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Allied Domecq사는 Ballantines, William Grant 등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다.

##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포도주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PEVI 2020 프로젝트' 를 시행하고 2005년 1월에 스파클링 포도주의 생산촉진을 위해 내국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시행령을 실시 하였다. 또한, 국내 주류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진흥기관인 "Fundacion Exportar" 를 통해 주류를 포함한 식품전반에 대해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과는 달리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출세(5%)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수출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업계 등에서는 수출세 폐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확보 및 물가안정을 위해 단기내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PEVI 2020 (Plan Estrategico Argentina Vitivinicola 2020)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포도주공사(COVIAR ; Corporación Vitivinicola Argentina)를 설립, 2003.12. 4 공사법 25849호가 제정되고 2004. 2. 26 부터 발효되었다. 동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포도주 수출액을 20억 달러 규모로 늘려 세계 포도주 교역량의 10% 점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포도주 업체

협회, 주요 포도주 생산 소재 지방 경제산업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행정령 제58/2005호(2005. 1. 31)를 통해 스파클링 포도주 생산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 20%에 이르던 내국세를 3년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알코올 규제와 관련해서 법령 24788(1997. 4. 3 관보 게재)인 “알코올 중독 방지법(Lucha contra Alcoholismo)”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금지, 길거리 및 운동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주금지, 주류의 알코올 농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류 라벨에 ‘적당한 음주를 권합니다 및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18세 미만 판매 금지’ 표기 의무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주류제품을 구입하거나 마시는 모습, 성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와인 TV나 잡지, 옥외 광고의 경우 와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거나 웃는 장면, 또는 와인 병과 재배지 사진 정도만을 허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촉진할 소지가 있는 광고의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부는市中에서 22:00시부터 8:00시까지 모든 종류의 알코올음료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3. 주류 수입관리 제도

#### 가. 수입허가 요건

주류를 수입·유통하려면 사전에 아르헨티나 식품관리청(Instituto Nacional de Alimentos : INAL)에서 유통

허가(Libre Circulacion)를 받아야 한다. 유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관리청장에게 유통허가(Libre Circulacion) 신청서를 제출(서류 수속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성명, 영주권 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고, 식품사업장 등록증(RNE ; Registro Nacional de Establecimientos), 식품등록증(NRPA ; Registro Nacional de Productos Alimenticios) 사본, 인보이스 또는 세금 계산서, 식품관리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출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수입절차

주류수입자는 주류가 도착함에 입항하여 하역이 확인되면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서(세관참고가 아닌 자가참고반입서)를 작성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신청을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통관한다. 수입신고는 ‘Maria System(S.I.M. ; Sistema Informatico Maria)’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세관통관 방식이 지정된다. 세관통관 방식으로는 '99. 1. 19부터 수입품의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는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생산품으로 즉시 통관이 가능하며,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는 서류심사 후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는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되며 통상 3~4일 소요된다.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는 세밀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되는데 통상 10일 내외가 소요된다. 세관검사방법은 ‘Maria System(S.I.M. ; Sistema

Informatico Maria)' 상에서 제품의 성격에 불문하고 서류번호만으로 컴퓨터를 통해 청색부터 적갈색까지 무작위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류가 일정한 색으로 지정되어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청색이 지정되거나 황색, 적색 또는 적갈색이 지정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통상 수입가격(CIF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92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가격 모니터링제(REDI)에 따라 아르헨티나 관세청이 고시하는 품목은 수입 최저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수입시 부과 되는 제세금은 아래와 같다.

\* 기타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

구 분	산정 방식	
대외세(A)	관 세	CIF 가격 x 관세율
	통계세	CIF 가격 x 0.5%
* MERCOSUR 역내제품, 잠정수입, 면세수입시는 면제		
대내세(B)	부가세	(CIF + A) x 21.0%
	추가부가세	(CIF + A) x 10.0%
	* 국내 판매 이익 예상액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선납세의 일종으로 추후 정산함	
소득세	(CIF + A) x 3.0%	

또한 주류상표(예 ; 브랜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뒷면 라벨(Back Label)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앞면 라벨 공간이 부족하여 뒷면 라벨을 부착할 경우 앞면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바코드(Bar Code)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상표규격에서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라벨의 내용을 육안(또는 시력이 나쁜 사람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① 브랜드
- ② 포도주종류
- ③ 알코올농도
- ④ 용량
- ⑤ Bottling 업체명 및 주소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업체 정보)
- ⑥ 생산업체 주소
- ⑦ 원산지
- ⑧ 경고문  
"Beber con moderación - Prohibida su venta a menores de 18 años"  
(적당한 음주를 권합니다 - 18세 미만 판매 금지)
- ⑨ INV 등록번호 (현지 생산품만)  
\* INV : 아르헨티나 포도산업청

#### 4. 주류관련 세금

아르헨티나의 일반적인 관세는 최고 35%이며,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 부가가치 제품 일수록 관세율이 높으며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LA) 회원국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 안데안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주류 관세율은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MERCOSUR 회원국은 0%, 역외국은 20%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소주는 2208.90.00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2208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가 동일하며 청주, 약주의 경우에 '2206.00.90'으로 분류된다면 관세(20%), 내국세(20%)가 부과된다.

내국세는 법령 제24674호(96. 8.16 관보게제)에 의하며 주류, 담배, 보석류 등에 부과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알코올 10도 이상인 경우 20%의 내국세가 적용된다. 다만 최소 10%의 주스 또는 과일이 들어가는 알코

올 음료(레몬의 경우 5%) 제품과 음료용 시럽 및 알코올 주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에서 최소 20%의 주스 또는 과일을 사용 했을 경우는 내국세가 50% 감면된다.

HS코드	품목명세	관세율
2203	맥주	
00.00	맥주	MERCOSUR 0%, 멕시코 10%, 역외국 20%
2204	포도주	
10.10	샴페인	MERCOSUR 0%, 역외국 20%
10.90	기타 발포성 포도주	MERCOSUR 0%, 칠레 14%, 역외국 20%
21.00	포도주(2 l 이하)	"
29.00	기타 포도주	"
30.00	기타 포도즙	"
2205	베르무트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10.00	베르무트(2 l 이하)	MERCOSUR 0%, 역외국 20%
90.00	기타	"
2206	과실 · 곡물 발효주	"
00.10	과실 · 곡물 발효주	"
00.90	기타 발효주	"
2207	무변성 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	
10.00	무변성 에틸 알코올	MERCOSUR 0%, 역외국 20%
20.10	에탄올	"
20.20	기타	"
2208	무변성 에틸알코올(80% 미만), 증류주, 기타 주정 음료	
20.00	브랜디 · 코냑	MERCOSUR 0%, 칠레 0%, 역외국 20%
30.10	위스키(50% 이상)	MERCOSUR 0%, 역외국 20%
30.20	위스키(2 l 이하)	"
30.90	기타 위스키	"
40.00	럼	"
50.00	진	"
60.00	보드카	"
70.00	리큐르	"
90.00	기타 증류주	"

자료원 : Tarifar(www.tarifa.com) / 아르헨티나 법령 690/2002호

주류 내국세 내역

구 분	내국세
맥 주	판매가의 8%
위스키	판매가의 20%
브랜드, 코냑, 진, 때겔라, 베스코, 보드카, 럼	판매가의 20%
기타 · 알코올도수 10~29도 · 알코올도수 30도 이상	판매가의 20%

한국산 주류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19,000명 내외의 교민을 상대로 소주(참이슬, 산), 백세주, 산사춘, 매실주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무역통계 기준 2004년도 U\$64,266이 수입되고 있는데 주로 한인 밀집지역인 백구, 아베자네다 지역의 한국식당에서 한인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 5. 연료용 알코올 현황

### 가. 기술개발 동향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석유부족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가장 발달한 에너지가 GNC(Gas Natural Comprimido ; 천연압축가스) 인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광대한 가스 매장량에 기인한다. 그 외에 방법으로는 대두, 사탕수두 등 식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연료(Bio- combustible)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료용 알코올은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는데 북부 투꾸만(Tucuman), 살타(Salta), 후후이(Jujuy) 주에서 소량 생산되나,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여 활성화 되지는 않은 상태로 연구개발 수준에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행정령 1396/2001을 통해 연료용 바이오 디젤 생산해 디젤 첨가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나. 연료용 알코올 시장의 향후 전망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바이오 연료법(Ley de Bio-combustible)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연료 5%에 해당하는 바이오 연료를 판매토록 할 계획에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의 바이오 연료 담당관은 바이오 연료가 전체 연료의 5% 내외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바이오 디젤의 경우 46만톤, 바이오 에탄올(연료용 알코올)의 경우 13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료용 알코올은 사탕수수 주요 생산지인 투꾸만 주정부가 주 경제 활성화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수확되는 사탕수수 100kg 당 10ℓ의 알코올이 생산되고 있으며, 투자와 개발로 인해 kg 대비 알코올 생산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